

MATERIAL SAFETY DATA SHEET

Number: No.03-2-074
Date prepared: 2003년 6월 24일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 및 회사정보
제품명: GC Sep
제조사/본사: GC Corporation
주소: 76-1, Hasunuma-Cho, Itabashi-Ku, Tokyo 174-8585
담당부문: 품질 보증부
전화번호:81-3-3965-1388
FAX 번호:81-3-3965-1276
작성 연월일: 2003.6.24

2. 유해, 위험성

최중요위험유해성: 가연성의 액체를 함유하고 있다.
유해성
증기·연무흡입: 증기를 빨아 들이면 유기용제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피부접촉: 자극이 있고, 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눈, 점막접촉: 자극이 있고, 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특정한 위험유해성: 참조 데이터 없음.
분류의 명칭: 인화성 액체, 급성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성분	화학식	CAS 번호	관보공시 정리 번호		함유량
			화심법	안위법	
Isopropyl Alcohol	(CH ₃) ₂ CHOH	67-63-0	(2)-207	492	40%
Polyethylene Glycol	HO(CH ₂ CH ₂ O) _n H	25322-68-3	(7)-129	(9)-25	
Polyoxyethylene Nonylphenylether	C ₉ H ₁₉ (C ₆ H ₄)O(CH ₂ CH ₂ O) _n H	9016-45-9	(7)-172	공표	10%
증류수	-	-	-	-	

4. 응급조치 요령

흡입했을 경우: 불쾌감을 느끼면, 환기가 잘 되는 장소로 옮긴다. 중독되었을 경우,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긴다. 중독된 사람의 머리를 낮게 하고, 옆으로 또는, 바로 눕히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호흡이 약해지거나, 정지하면 인공 호흡을 한다. 신속하게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피부에 부착되었을 경우: 오염된 의류 등은 신속하게 벗는다. 접촉한 부분을 물 또는 미지근한 물로 흘려 보내면서 세정한 후, 비누로 잘 씻어 낸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 깨끗한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세정한 후,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삼켰을 경우: 다량의 물 또는 소금 물을 마시게 한 후, 토하게 한다. 신속하게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소화제: 거품, 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물.
특정한 소화 방법: 신속하게 용기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이동 불가능할 경우는 용기 및 주위에 물을 뿌려 냉각시킨다. 발화 지점의 연소원을 제거하고, 소화제를 사용하여 소화한다.

GC_Sep

물을 뿌려 화염에 노출된 표면을 식힌다. 물을 직접 쏟으면 화염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한다. 소화 작업은 바람이 오는 쪽에서 하고, 소화를 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호흡 보호 도구를 착용한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에 대한 주의사항: 보호 도구를 착용하고, 바람이 오는 쪽에서 작업한다.

환경에 대한 주의사항: 하수 등에 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제거 방법: 누설된 액은 흙더미 등으로 흐름을 막고, 안전한 장소에 이 끌어서 회수한다. 양이 적을 경우는, 흙더미, 톱밥, 청소용 걸레 등으로 흡수시킨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아래주의사항의 기타, 첨부 문서 또는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준수 바랍니다.)

취급:

기술적 대책

- ① 가능한 눈,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 안경,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할 것.
- ② 증기 발산을 가능한 억제하고, 작업 환경을 허용 농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 ③ 취급 후에는 손을 충분히 씻고, 작업복 등에 부착되었을 경우는 갈아입을 것.

주의사항

- ① 화기주의.
- ②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화 장치를 구비할 것.

안전취급 주의사항

- ① 용기는 사용 후, 바로 밀봉할 것.
- ② 본 재료를 화기의 가까이에서 사용하거나, 화기의 가까이 두지 말 것.
- ③ 테이블, 마루 위 등 흘렸을 경우는, 곧 마른 천으로 잘 닦을 것.

사용상 주의(중요한 기본적 주의)

- ① 본 재료에 대하여 발진, 피부염 등의 과민증의 기왕 경력이 있는 시술자는, 본 재료를 사용하지 말 것. 또, 사용에 의해 과민증상을 일으켰을 때는, 사용을 중지하고, 곧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 ② 피부에 부착되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피부에 부착되었을 경우, 곧 알코올 솜 등으로 닦은 후, 흐르는 물로 세정할 것. 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 바로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정하고, 안과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 ③ 기타의 제품과 혼용하지 말 것.
- ④ 본 재료는, 왁스 업 시의 각종 치형재 분리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 ⑤ 본 재료는, 치과의료유자격자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

보관:

적절한 보관 조건

- ① 화기주의
- ② 고온이 될 수 있는 장소(스토브 근처, 직사 광선이 닿는 장소 등)에 방치하지 말 것.)
- ③ 보관 장소에는, 소화 장치를 구비할 것.
- ④ 화기업금의 냉암소에 보관하고, 하나의 보관고에 다량으로 보관하지 말 것.
- ⑤ 치과 종사자 이외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관리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설비 대책: 증기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마련한다. 취급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는 방폭 구조로 하고, 기기 류는 정전기 대책을 강구한다.

보호 도구:

호흡기용 보호 도구: 유기 가스용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손 보호 도구: 보호 장갑.

눈 보호 도구: 보호 안경.

피부 및 신체의 보호 도구: 보호 장화.

9.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적 상태

GC_Sep

형상: 액체.
 색: 황색.
 냄새: 용제냄새.
 물리적 상태가 변화되는 특정한 온도/온도범위
 비점: 데이터 없음.
 융점: 데이터 없음.
 인화점: 데이터 없음.
 밀도: 데이터 없음.
 용해성: 데이터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안정성·반응성: 강산, 산화제등과 혼합하면, 화학반응에 의해 발열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피해야 할 재료: 강산화제와의 접촉은 피할 것.
 위험 유해한 분해 생성물: 정보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급성독성: 데이터 없음.
 국소효과: 데이터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동성: 정보 없음.
 잔류성/분해성: 정보 없음.
 생체 축적성: 정보 없음.
 생태독성
 어독성: 정보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잔여폐기물
 사용이 끝난 제품은 의료폐기물로서 처리할 것.
 미 사용품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외, 지방자치체의 조례 등을 따라서 폐기할 것.
 용기 등을 세정한 오수는 지면이나 배수구에 그대로 흘리지 말 것.
 오염 용기·포장의 폐기 방법
 상기 잔여폐기물의 내용에 같음.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기재된 취급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을 따른다. 용기는 새지 않는지 확인하고, 전도, 낙하, 손상이 없도록 신고, 적하물 붓고 방지를 확실히 한다.

15. 법적 규제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를 준수하여 취급할 것.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규제:
 내용참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의한규제:
 위험물에 분류되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준수할 것.
 폐기물관리법에의한규제내용기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폐기처리되어야 함.
 <Isopropylalcohol 성분에 대하여>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 제 18 의 2 별표 제 9[명칭 등을 통지해야만 하는 유해물]492
 노동안전위생법: 유기촉(제 2 종 유기용제)
 : 시행령별표 제 1 위험물(인화성물)
 : 시행령별표 제 6 의 2 유기용제(제 2 종 유기용제)

GC_Sep

: 시행령 제 18 조(명칭 등을 표시해야만 하는 유해물)
 : 시행령 제 18 조 2[명칭 등을 표시해야만 하는 유해물(MSDS 대상물질)
 소방법 : 제 2 조 위험물 제 4 류 알코올류(400I)
 바젤법: 제 2 조 특정 유해 폐기물 등(0.1 중량%를 넘는 것)
 외위법: 수출령 별표 제 2 의 35 의 2 항(0.1 중량%를 넘는 것)
 선박안전법: 위규칙 제 3 조 위험물등급 3 인화성 액체류(정 3 용기등급 2)
 항공법: 시행규칙 제 194 조 위험물 인화성액체(G 등급 2)
 항칙법: 시행규칙 제 12 조 위험물 (인화성액체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 1 조 3 별표 제 1 의 2(유해하지 않은 물질)
 : 시행령 제 1 조 5 별표 제 1 의 3(위험물)

국련번호: UN1219

IMDG: CLASS 3 등급 II

ICAO/IATA: CLASS 3 등급 II PAT305 Y305 CAO307

< Polyethylene Glycol 성분에 대하여>

소방법 : 위험물[제 4 류 제 4 류 석유류]에 해당
 바젤법 : 제 2 조 특정 유해 폐기물 등(0.1 중량%를 넘는 것)
 외위법 : 수출령별표 제 2 의 35 의 2 항(0.1 중량%를 넘는 것)

< Polyoxyethylene Nonylphenylether 성분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촉진법: 제 2 조 제 1 종 지정화학물질
 바젤법 : 제 2 조 특정 유해 폐기물
 외위법 : 수출령별표 제 2 의 35 의 2 항
 해양오염방지법 : 시행령 별표 제 1 유해액체물질(B 류)
 PRTRA 법 : 제 1 종 지정화학물질 No.309

16. 기타 참고사항

상기의 정보는 조사 후 기입한 것입니다만, 모두를 망라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취급 시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위험유해성의 평가는 항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취급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주된 인용 문헌

(社)일본화학공업협회 「제품안전 data sheet 의 작성 지침(개정 판)」

화학 공업 일보사 「화학품 안전관리 데이터 북」

화학 공업 일보사 「14303 의 화학상품」

제조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되어짐